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최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종길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도문열, 민병주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봉양순, 서상열, 신동원,
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
이민옥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숙자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
장태용, 정준호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44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도로에서 하는 공사나 중장비들을 쓰는 건설현장에서 신호수나 유도자를 두도록 해서 안전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교통을 통제하고 중장비 사용 시 사각지대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
- 신호수에 대한 안전은 관련 상위 법령의 규정이 미비하고 안전교육도 4시간 건설 기초 교육만 받고 투입되다 보니 신호수가 현장에서 사고에 노출되어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신호수가 안전하게 신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전 장구와 안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상의 공사 시행 시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(안 제11조제2항 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 중 “배치”를 “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교통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교통안내 신호수의 <u>배치</u>에 관한 사항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11조(도로상의 공사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배치</u> 및 <u>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</u>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2항제2호 중 “배치”를 “배치 및 배치에 따른 안전장구·안전교육”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